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9호
일부개정	2014년	4월	2일	조례	제1349호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년	7월	1일	조례	제1498호
일부개정	2016년	11월	3일	조례	제1523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0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제2조(국·소장 및 부서장의 직급 등) 시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개정 2017. 4. 3, 2018. 12. 26>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제4조(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

관,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7. 4. 3, 2018. 12. 26>

②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신설 2018. 12. 26>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 12. 26>

1. 홍보담당관은 시정 및 시책의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
2. 감사담당관은 시 행정의 감사확인 및 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에 관한 사항
3.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및 정책평가, 예산, 의회 및 법제 사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2. 26]

제6조 삭제 <2018. 12. 26>

제7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4. 4. 2, 2017. 4. 3, 2018. 2. 9, 2018. 12. 26>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 2016. 7. 1, 2017. 4. 3, 2018. 12. 26>

1. 행정·총무·인사·교육 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 4. 3>
6. 정보·통신·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총괄·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 4. 3]

제8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는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3. 11. 25, 2015. 6. 1, 2016. 7. 1, 2017. 4. 3, 2018. 12. 26>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2. 9>

1. 복지정책·노인·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 가족·여성·아동·보육·청소년 복지 및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민원,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 4. 2, 2015. 6. 1, 2017. 4. 3, 2018. 2. 9>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 2015. 6. 1, 2016. 7. 1 2018. 2. 9, 2018. 12. 26>

1. 일자리정책·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기업·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관광·문화재·체육에 관한 사항
4. 농업·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중·식품위생·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6. 토지관리·지적·주소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정책과, 미래사업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 <개정 2013. 11. 25, 2014. 4. 2, 2017. 4. 3, 2018. 12. 26>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11. 25, 2014. 4. 2, 2015. 6. 1, 2016. 7. 1, 2017. 4. 3, 2018. 12. 26>

1. 도시계획·택지·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도로건설·정비에 관한 사항
3. 교통정책·교통시설·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도시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 4. 3>
6. 주택·공동주택·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7. 주요 현안, 전략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2. 26]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15. 6. 1>

제12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5. 6. 1]

제13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환경사업소에는 환경과, 수도과, 하수과, 하천공원과를 둔다. <개정 2015. 6. 1>

제15조(소장 및 관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소장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① 환경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 2015. 6. 1, 2016. 7. 1, 2018. 12. 26>

1. 환경정책·환경지도·청소·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2. 수도관리·시설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하수행정·하수관리·하수처리·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관리·공원조성·관리 및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②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 6. 1>

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 12. 26>

1. 차량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2.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

제17조(설치)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8조(직무)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5. 6. 1>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1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7. 1, 2016. 11. 3, 2017. 4. 3, 2018. 2. 9, 2018. 12. 26>

1. 집행기관의 정원: 69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본조신설 2015. 6. 1]

제21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6. 1]

제22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1]

제23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도시정책국장”을 “복지교육국장·도시정책국장·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②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도시정책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도시정책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도시정책국장”을 “복지교육국장·도시정책국장·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⑤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난,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의 공표부서 “건설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제증명등 수수료 조정계획의 공표부서 “세무과”를 “징수과”로, 청소년 시설현황의 공표부서 “사회복지과”를 “가족여성과”로, 교량안전점검및진단결과의 공표부서 “건설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⑥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정책국 교통과”를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로,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한다.

⑦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⑧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⑨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⑬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여성과장”으로 한다.

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⑰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도시정책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⑱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⑲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도시정책국장”을 “복지교육국장·도시정책국장·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⑳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㉑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㉒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도시정책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㉓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㉔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㉕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1. 25 조례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2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별표 중 재난,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의 공표부서 및 교량안전점검및 진단결과의 공표부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⑦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오산시 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오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⑬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⑯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⑰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협력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4. 2 조례 제1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시의 부문별 주요통계 분야 인구통계의 공표부서 “민원토지과”를 “민원여권과”로, 토지거래현황의 공표부서 “민원토지과”를 “토지정보과”로, 차량등록 현황의 공표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과”로 하고, 민원처리업무 관련 업무편람 분야 민원업무편람의 공표부서 “민원토지과”를 “민원여권과”로 하며,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야 개별공시지가의 공표부서 “민원토지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

②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를 “안전도시국 차량등록과”로 한다.

③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④ 「오산시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민원토지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6. 1 조례 제13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하고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공표

구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시의 부문별 주요통계	지적통계	<u>토지정보과</u>	월1회	매월	"
부서별 주요현황	민원처리실적	<u>민원여권과</u>	연1회	1월중	"
	결혼중개업소현황	<u>가족보육과</u>	연1회	1월중	"
	오산시여성상 수상현황	<u>가족보육과</u>	연1회	7월중	"
	상수도 보급률	<u>수도과</u>	연1회	2월중	"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u>수도과</u>	월1회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u>수도과</u>	월1회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	재난,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u>안전총괄과</u>	연1회	1월중	"
	신설급수공사 연간단가산출 및 고시	<u>수도과</u>	연1회	2월중	"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	<u>평생교육과</u>	분기1회	1,4,7,10월중	"

2. 수시공표

구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부서	공표 주기	공표 시기	공표 방법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상수도 사용료 조정계획	<u>수도과</u>	수시	계획확정일부 터 1월이내	"
법규위반업소	식품위생 관련 법규위반 업소 위반내용, 조치결과	<u>농식품위생과</u>	수시	수시	"
부서별 주요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u>노인장애인과</u>	수시	수시	"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u>노인장애인과</u>	수시	수시	"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u>노인장애인과</u>	수시	수시	"
	지역아동센터현황	<u>가족보육과</u>	수시	수시	"
	아동그룹홈현황	<u>가족보육과</u>	수시	수시	"
	장난감대여점	<u>가족보육과</u>	수시	수시	"
	청소년시설현황	<u>가족보육과</u>	수시	수시	"
	장애인시설현황	<u>노인장애인과</u>	수시	수시	"
	보육시설 설치안내	<u>가족보육과</u>	수시	수시	"
	보육시설현황	<u>가족보육과</u>	수시	수시	"
	등산로현황	<u>농식품위생과</u>	수시	수시	"
	식품위생업소현황	<u>농식품위생과</u>	수시	수시	"
	공중위생업소현황	<u>농식품위생과</u>	수시	수시	"
	약수터현황	<u>수도과</u>	수시	수시	"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배달강좌 런앤런 강좌정보	<u>평생교육과</u>	수시	수시	"
	도시공원현황	<u>하천공원과</u>	수시	수시	"
	근린공원현황	<u>하천공원과</u>	수시	수시	"
	어린이공원현황	<u>하천공원과</u>	수시	수시	"
	소공원현황	<u>하천공원과</u>	수시	수시	"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구분		공표방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u>수도과</u>	수시	계획변동일부 터 1월이내	
	혁신교육도시 사업 추진현황	<u>평생교육과</u>	수시	의회의결일부 터 1월이내	”

②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민원여권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로 한다.

④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 가족여성과장”을 “희망복지과장, 가족보육과장”으로 한다.

⑤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 가족여성과장”을 “희망복지과장, 가족보육과장”으로 한다.

⑥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농림공원과장”을 “농식품위생과장”으로 한다.

⑦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문화체육과장·가족여성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문화체육과장·가족보육과장”으로 한다.

⑩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가족여성과장”을 “가족보육과장”으로 한다.

⑪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농림공원과장”을 “하천공원과장”으로 한다.

⑫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림공원과장”을 “농식품위생과장”으로 한다.

⑬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생태하천과장”을 “하천공원과장”으로 한다.

⑭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3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감사관”으로 하며,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③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하며,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⑧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별표의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감사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며,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⑨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 중 “안전도시국”을 “미래도시국”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⑩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⑫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⑬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오산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편성기관(기획감사관)”을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⑯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⑰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⑱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⑲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⑳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㉑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별표 3]의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별표 4]의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별표 5]의 “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 [별표 6]의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별표 7]의 “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감사관”으로 한다.

㉔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㉕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㉖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㉗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홍보감사관”으로 하고,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하며,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㉘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공보관”을 “홍보감사관”으로 하고,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㉙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㉚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㉛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㉜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㉝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㉞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㉓ 「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㉔ 「오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2. 9 조례 제1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 중 “안전행정국 세무과”를 “안전행정국 세정과”로 한다.

②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③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별표 4〕의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별표 5〕의 “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 〔별표 6〕의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별표 7〕의 “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⑦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④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 중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과 청소년특별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과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의 “가족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의 “도시과”를 “도시정책과”로 한다.

⑦ 「오산시의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홍보감사관·기획예산관”을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관)”을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⑪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도시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⑫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⑬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중 “미래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4]의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중 “홍보감사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건설도로과”를 “도로과”로 하고,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한다.

[별표 5]의 “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 중 “홍보감사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건설도로과”를 “도로과”로 하며,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한다.

[별표 6]의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중 “홍보감사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건설도로과”를 “도로과”로 하고,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한다.

[별표 7]의 “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 중 “홍보감사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한다.

⑮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미래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⑰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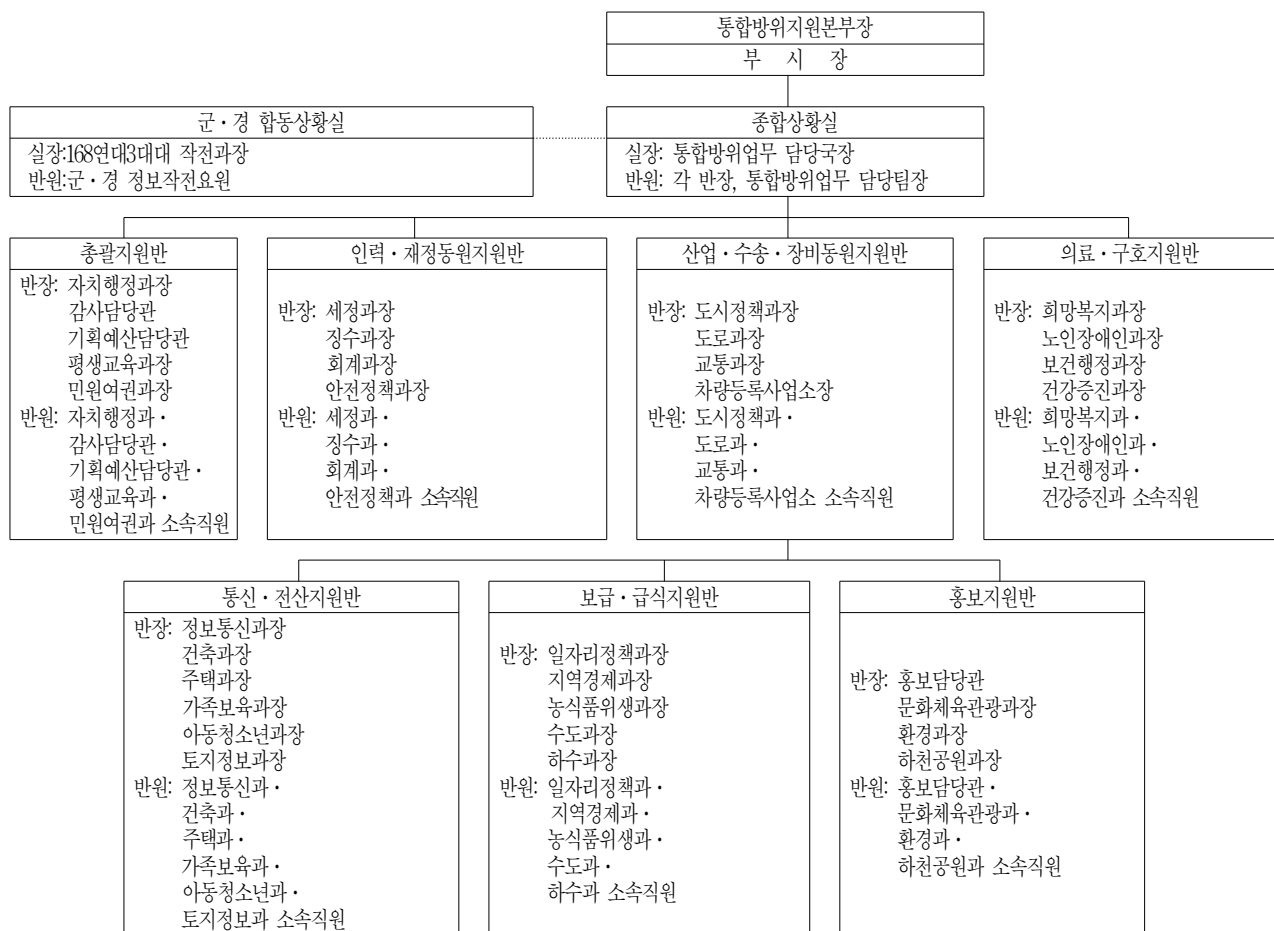
제15조제3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며, “도시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며,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오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⑳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㉑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㉒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㉓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 ㉔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 ㉕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관, 건설도로과장, 건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장, 주택과장”으로 한다.
- ㉖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㉗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 ㉘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가족보육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㉙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 ㉚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국·과장”을 “국·소·과장”으로 한다.
- ㉛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축과”를 “주택과”로 한다.
- ㉜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오산시보건소	오산시 경기동로 59	오산시 일원

[별표 2] <개정 2018. 12. 26>

사업소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오산시환경사업소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시중앙도서관	오산시 운암로 85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오산시 청학로 98

[별표 3] <신설 2015. 6.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구분	일반직	별정직 · 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신설 2015. 6. 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5% 이내	8% 이내	24% 이내	30% 이내	27% 이내	9.5%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3% 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 이내	30% 이내	40% 이내	20% 이내	7%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개정 2018. 12. 26〉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국 무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15	715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	-	-	-	-
일반직 계	713	713					
3 급	1	1	-	-	-	-	-
4 급	6	4	-	1	1	-	-
5 급	43	26	2	3	6	6	6
6급 이하 계	663	663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1	1					